

2026년 통합재가기관 기반

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안내

□ 사업개요

- (사업기간) 2026. 7. 30.~ 12.31. ... 사업기간 변경시 별도 안내
- (수행기관) ❶통합재가기관(방문요양 소속 요양보호사), ❷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노인요양시설(추가배치가산 간호(조무)사)
 - (배상책임보험)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가입 필수
 - ※ 기존에 가입한 배상책임보험회사에 병원동행 시범사업 서비스 보장 가능 여부 확인 후 증빙서류(보험증서 등) 발급 필요
- (이용대상) ❶통합재가기관 이용 장기요양 수급자(1~5등급), ❷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노인요양시설* 이용 장기요양 수급자(1~5등급)
 - * 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과 같은 권역(시·도) 내 위치
- (사업내용) 이동 보조, 병원 내 수속 등 쏘 진료 과정 돌봄 및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병원동행* 서비스 제공
 - * 대중교통·도보 이용 또는 지자체 교통약자차량 연계
 - (통합재가기관) 해당 기관 이용 장기요양 수급자(1~5등급) 또는 협약 노인요양시설 이용 장기요양 수급자(1~5등급) 대상 병원동행 제공
 - ※ (가정방문형) 방문요양 인력 등록 요양보호사에 한해 해당 기관의 방문요양 이용 수급자, 협약 노인요양시설 이용 수급자 대상 병원동행 가능
 - ※ (주야간보호형) 방문요양 인력 등록 요양보호사에 한해 해당 기관의 방문요양·주야간보호 이용 수급자, 협약 노인요양시설 이용 수급자 대상 병원동행 가능
 - (노인요양시설) 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노인요양시설에 한해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가 병원동행 제공
 - ※ 간호(조무)사 추가배치가산 기관은 간호(조무)사가 병원동행 제공 가능

□ 급여비용

- (통합재가기관 방문요양보호사 제공) ①180분미만 제공 시 왕복 34,120원 (편도 50%), 180분이상 제공 시 왕복 57,020원(편도 50%), ②통합재가기관 인센티브 월 10만원(5명 이상 제공 시), ③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적용(일반 15%, 감경 6%·9%, 기초 무료)
 - 주·야간보호 이용 중 병원동행 제공 시 주·야간보호 및 병원동행 서비스 시간 모두 인정 ... 병원동행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금 면제
- (협약 노인요양시설 간호(조무)사 제공) 시간·거리 관계없이 왕복 10,000원(편도 5,000원, 본인부담 無)
- (이용한도) 이용자 1인당 연 50만원 범위 내 이용 가능
 - ※ 병원동행 이용 시 서비스 수가만큼 연간 이용한도에서 차감

【 모형 요약 】

	통합재가기관		노인요양시설
	가정방문형	주야간보호형	
대상자	통합재가기관 이용 장기요양 수급자(1~5등급)		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노인요양시설 이용 장기요양 수급자(1~5등급)
제공인력	방문요양 인력으로 등록된 요양보호사		①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 요양보호사 ② 인력추가배치 가산 간호(조무)사
차량	대중교통(버스, 택시 등), 도보 또는 지자체 교통약자차량 연계 ※ 대중교통 등 차량이용비는 수급자 전액부담		
제공기준	○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 외 병원동행 제공	○ 주야간보호 이용 시간 내 병원동행 제공 ※ 병원동행 제공 시간만큼 급여제공 시간으로 인정	○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는 간호(조무)사를 통해 병원동행 제공
	※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시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		
이용한도	이용자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 이용 ※ 병원동행 이용 시 서비스 수가만큼 연간 이용한도에서 차감		
수가	① (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제공) - 왕복 34,120원(180분미만 제공 시), 왕복 57,020원(180분 이상 제공 시) ※ 편도 제공 시 왕복 수가의 50% 적용 ② (노인요양 시설 내 인력추가배치가산 간호(조무)사 제공) 왕복 10,000원, 편도 50%		
인센티브	(통합재가기관만 해당) 5명이상 서비스 제공 시 기관당 월 10만원 지급		
본인부담금	① (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제공)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적용 - 예시) 15% 적용 시: 왕복 5,110원(180분미만 제공 시), 왕복 8,550원(180분이상 제공 시) ※ 편도 제공 시 왕복 수가의 50% 적용 ② (주야간보호 이용 수급자의 병원동행 제공) 본인부담금 없음 ③ (노인요양시설 내 인력추가배치가산 간호(조무)사 제공) 본인부담금 없음		
월한도액	월한도액 미포함		